

# 명예학위 규정

제정 2013. 3. 1.    개정 2014. 3. 1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대경대학교 명예학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학위증서 수여의 대상)** 학위증서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.

1. 우리 대학에 입학하여 학적을 두었다가 제적된 자로서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과 명예를 빛낸 자
2. 재학 중 사망한 자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 학생의 귀감이 되었던 자
3.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

**제3조(학위증서 수여의 시기)** 명예학위증서는 별지 제1호와 같이 수여하며 정규 학위수여일 이외에도 할 수 있다.

**제4조(수여자의 대우)** 명예학위자는 우리 대학 정규 졸업생과 동등한 대우를 한다.

**제5조(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** ① 명예학위수여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명예학위 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교학처장, 학부장, 해당 학과 학과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학처장이 된다. <개정 2014.3.1.>

**제6조(학적부의 기록)** 명예학위자는 학적부에 명예학위에 관한 사항을 등재한다.

**제7조(학위의 취소)** 명예학위자가 우리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경우 총장은 명예학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